

#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~ 1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4. 12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<p><b>1. 제정이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. 1. 1일 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의거 「지방재정공시제도」가 운영됨에 따라</li> <li>○ 현행 「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 70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「거창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」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</li> </ul>
<p><b>2. 주요내용</b></p> <p>가. 위원회 구성(안 제2조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성 인원 :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임 기 : 2년(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)</li> </ul> <p>나. 주요 심의사항(안 제3조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</li> <li>-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, 채권 관리현황</li> <li>- 기금운용 현황,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여부</li> </ul> <p>다.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(안 제8조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의거 지급</li> </ul>
<p><b>3. 참고사항</b></p> <p>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             ▶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 【도 예산담당관-1097(2006.2.22)호】</p> <p>나. 예산조치 : 없음</p> <p>다. 기 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</li> <li>(2)입법예고(2006. 3. 10~ 4. 1)결과 : 의견제출 없음</li> </ul>

##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.

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회는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3. 기타 지방재정계획(지방재정운영, 자원조달, 투자사업 수립 등)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
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위원회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예산담당

주사가 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수당과 여비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 및 「거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